

의안번호	제40호
의결 년월일	2026. 4. 22. (제337회)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6. 4. 10.

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0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0.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출자출연법」 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효율성·효과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재단의 사업 중 ‘군의 대행이나 위탁 사업’ 조문 추가(안 제9조)
- 정관의 제정·변경, 기본재산 처분 등 사항 정비(안 제10조)
 - (기존)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 ‘승인’
 - (개정) 군수 ‘협의’
-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2조)
 - (기존)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‘제출 후 승인’
 - (개정)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‘보고’
- 기타 용어 표기 정비(안 제1조, 안 제8조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8조, 제18조, 제21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기 타
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385)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248)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8370)
 - 입법예고(2026. 2. 20. ~ 2026. 3. 12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우리군”을 “금산군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군”을 “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금산 교육경쟁력”을 “교육경쟁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교육 발전을 위해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

제10조의 제목 “(사전승인)”을 “(협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.”를 “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우리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“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”를 “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우리군의</u> 우수인재 발굴·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금산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장학기금의 조성 등)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.</p> <p>1. <u>군의</u> 출연금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장학기금의 조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금산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</u> 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9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교육경쟁력</u> -----</p> <p>4. <u>교육 발전을 위해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10조(<u>사전승인</u>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<u>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<u>군수</u>에게 승인을</p>	<p>제10조(<u>협의</u>) ----- ----- <u>사전에</u> <u>군수</u>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

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우리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(사업계획 및 결산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계연도) -----
--- 군 -----.

제12조(사업계획 및 결산) ① ---

----- 보고하여야 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6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
8. 이사회 운영
9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10. 예산과 회계
11. 정관의 변경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,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